■ 해운법 시행규칙 [별표 2의2] <신설 2015.7.7.>

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(제5조제6항 관련)

사업의 종류	자본금
내항 정기(부정기) 여객운송사업	·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: 2억원 이상 ·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: 4억원 이상 ·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: 10억원 이상
외항 정기(부정기) 여객운송사업	10억원 이상
순항 여객운송사업	50억원 이상
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	50억원 이상

비고

여객선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.